강릉시의회 공고 제2023-32호

「강릉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강릉시의회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년 10월 30일

강 룽 시 의 회 의 장

강릉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

1. 제정이유

○ 이상기후 및 밀원수 부족 등으로 양봉산업 및 농가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에 체계적인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으로 양봉농가의 소득 증진과 더 불어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 더 나아가 생태계 보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규정(안 제1조~제2조)
- 나. 양봉산업 육성ㆍ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(안 제4조)
- 다. 지원 대상 및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(안 제5조~제6조)
- 라. 양봉농가의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(안 제7조)

3. 의견제출

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강릉시의회의장(참조: 의회사무국산업전문위원/☎033-640-4034)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
나. 제출자의 성명(법인·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), 주소, 전화번호다. 기타 의견

[보내실 곳]

○ 우 편: (25522) 강원도 강릉시 강릉대로 33(홍제동) 강릉시의회 의회사무국

O 이메일: ps7430@korea.kr

○ 팩 스: 033-640-4070

붙임 1. 강릉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.

2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제출서 1부. 끝.

강릉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- 제1조(목적) 강릉시 양봉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봉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양봉산업을 확대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 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 - 1. "양봉산업"이란 「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.
 - 2. "양봉농가"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농가를 말한다.
 - 3. "밀원식물"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식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.
- 제3조(시장의 책무) ① 강릉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은 양봉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.
 - ② 시장은 밀원식물의 지속적인 확대를 위하여 밀원식물을 보호하고 육성 보급하여야 한다.
 - ③ 시장은 양봉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가 양봉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.

제4조(육성ㆍ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) 시장은 양봉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양

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계획(이하 "지원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· 시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- 1. 양봉산업의 현황 및 지원 방향에 관한 사항
- 2.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중장기 투자계획
- 3. 양봉 기술교육에 관한 사항
- 4. 꿀벌 질병 방역 등에 관한 사항
- 5. 밀원식물의 조성 및 보급 관리에 관한 사항
- 6. 양봉농가의 경영안정에 필요한 지원 방안
- 7. 양봉산업의 현황 등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
- 8.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로 인한 양봉산업의 피해에 대한 조사 및 지원 에 관한 사항
- 9. 그 밖에 양봉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(지원 대상)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양봉산업의 육성을 위한 지원 대상 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 - 1. 강릉시에 주소를 둔 양봉농가
 - 2. 주된 사업장이 강릉시에 소재한 양봉 법인 또는 생산자 단체
- 3. 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강릉시에 등록된 양봉농가 제6조(사업 등) ① 시장은 양봉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 - 1. 양봉 관련 시설 · 기자재 지원
 - 2. 양봉 산물 · 부산물 가공시설의 설치

- 3. 꿀벌 신품종 및 종군 육성 · 보급 사업
- 4. 양봉농가의 경영안정에 필요한 사업
- 5. 꿀벌 및 양봉 산물 부산물의 유통 판매
- 6. 밀원식물의 식재·증식 및 보호 사업
- 7. 그 밖에 양봉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-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양봉농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- 제7조(양봉농가의 육성) ① 시장은 양봉농가의 육성을 위하여 전문기관 등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.
 - ② 시장은 양봉농가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시설·질병·사양관리 등에 필요한 교육·견학·컨설팅을 실시할 수 있다.
- 제8조(포상) 시장은 강릉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기여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·단체 등에 「강릉시 포상조례」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제출서

	1 1	넁	:	
0	성명	(단>	체명)	:
\bigcirc	ス		入	

○ 연 락 처 :

제・개정안 내용	의	 견	비고